

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신 고: 7일 변경신고: 5일
신고인	①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영업소	상호		
	주소	전화번호	
	②종류		
	③규모		
체육지도자	성명	자격종류 및 자격번호	
	주소		
④변경신고 사항	신고번호	제	호
		변경 전	변경 후
	신고일		
		년	월
		일	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) 1부 4.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					수수료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 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
	공부(公簿)확인	확인날짜	확인 결과	확인자	비고	
	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관련법규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

<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>

-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요트장업 | 7. 수영장업 | 13. 무도학원업 |
| 2. 조정장업 | 8. 체육도장업 | 14. 무도장업 |
| 3. 카누장업 | 9. 골프 연습장업 | 15. 야구장업 |
| 4. 빙상장업 | 10. 체력단련장업 | 16.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|
| 5. 승마장업 | 11. 당구장업 | 17. 체육교습업 |
| 6. 종합 체육시설업 | 12. 썰매장업 | 18. 인공암벽장업 |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·변경신고를 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. 다만, 체육도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. 예시) 체육교습업(축구)
-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. 다만,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,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(사업장 바닥면적)을 적습니다.
-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-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제1호)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3호).
-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4호).
-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,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